

**2022년도**

**나주 금천-화순 도암 국가지원지방도 기본설계 등 4건  
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**



**익산지방국토관리청**

국토교통부

# 목 차

- I . 설 계 설 명 서
- II . 일 반 과 업 지 시 서
- III . 특 별 과 업 지 시 서
- IV .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
- V . 근 무 계 획 표
- VI . 설 계 예 산 서

# I. 설계설명서

1. 과업명 : 나주 금천-화순 도암(1공구) 국가지원지방도 기본설계 등 4건 건설사업관리용역

## 2. 과업의 목적

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(이하 ‘건진법’이라 한다)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‘나주 금천-화순 도암(1공구)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’ 등 4건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절감, 기능향상,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설계용역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과업의 범위

노선	대상 설계용역명	설계구간		차로수	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		비고
		행정구역	연장(km)		구분	대상수량(개소/m)	
국지도58호선	금천-도암 (1공구)	전남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~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	5.55	4	교량	11개소/370m	기본설계, 실시설계
국지도58호선	금천-도암 (2공구)	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~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	6.45	4	교량	8개소/1,280m	기본설계, 실시설계

## 4. 과업의 주요내용

- 건설사업관리(설계용역)
- 설계의 경제성(VE) 등 검토
- 주요공법 및 특정자재 검토

## 5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개월(360일)

## II. 일 반 과 업 지 시 서

## 1. 과업의 범위

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공사 관련규정에의 적합성, 구조물의 안전성, 경제성 등을 검토·분석하며, 설계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반영토록 하고, 검토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

## 2. 주요 과업내용

- 가. 건설공사의 관련법령·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 적합성 검토
- 나.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
- 다.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
- 라.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
- 마.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
- 바.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
- 사. 설계공정의 관리
- 아.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
- 자. 설계의 경제성 검토
- 차.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
- 카.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
- 파.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

## 3. 관련 시방서 및 규정

- 건설사업관리 및 VE를 시행함에 있어 나주 금천-화순 도암 국가지원지방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과업 내용서와 아래의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1)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

2)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

- 도로설계기준
- 도로교설계기준
- 구조물 기초설계기준
- 터널설계기준
- 하천설계기준
-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
- 도로공사 표준시방서
- 콘크리트 표준시방서
- 도로교 표준시방서
-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
- 터널공사 표준시방서
-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

3) 일반국도 구조물, 옹벽표준도 및 부대시설물도

4) 도로관련 각종 지침 등

-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
-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
-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
-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등
- 도로용량편람
- 도로설계편람,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,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등
-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

- 5)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(건설기술진흥법, 도로법, 국토계획법 등)
- 6)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
- 7)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
- 8) 환경정책기본법,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
- 9) 산업안전보건법
- 10) 소방법
- 11)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
- 12)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5호, '20.1.13.)
- 13)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,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

#### 4. 건설사업관리의 기본임무

- 1) 설계용역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당해 설계용역이 관련법령,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,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.
- 3)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용역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5)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이 용역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3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

- 1)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,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3)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,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4)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5)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,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,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6)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7)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중요한 방침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8)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용역 수행 중은 물론 설계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9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10)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.

#### 4. 운 영

- 1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,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하여야 하며,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구조, 토질(지질), 도로분야 등으로 설계용역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 (단, 사업책임기술인의 책임 하에 설계VE분야 책임 기술인을 리더로 별도조직을 구성,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승인받아 운영한다.)
- 3)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,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확인·점검하여야 하며,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설계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5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서 설계내용의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,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은 설계진행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.
- 6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,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인 경우에는 발주청장의 승인(유선승인가능)을 받아야 한다.
- 7) 본 과업 도급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기간 중 건진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8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.

## 5. 기타

- 1)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.
- 2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
- 3)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### III. 특별과업지시서

## 1. 과업수행기간

-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(360일)로 하고,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2. 설계변경조건

- 가.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
- 나.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
- 다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
- 라.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당초 설계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된 경우
- 마.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·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바. 본 용역의 용역비는 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”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, 당초 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.
- 사. 대상 설계용역 실 잔여공기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.
- 아.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경우

## 3.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

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가.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
- 나.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
- 다.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
- 라.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

#### 4. 과업 참여자의 배치 기준

1)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,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가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분야	인원	기간(월)	비고
건설사업관리기술인 (특급기술인)	- 도로 및 공항(사업책임) - 토질 및 기초(지질) - 토목구조 - 시공분야 - 설계VE분야	1 1 1 1 1	9 9 9 9 9	
건설사업관리기술인 (고급기술인)	- 토목구조 - 토질 및 기초(지질) - 도로 및 공항 - 시공분야 - 설계VE분야	1 1 1 1 1	9 9 9 9 9	
건설사업관리기술인 (중급기술인)	- 토목구조 - 토질 및 기초(지질) - 도로 및 공항 - 시공분야	1 1 1 1	9 9 9 9	
계		14	126	

나. 건설사업관리기술인(특급기술인, 고급기술인, 고급기술인)의 자격 : 관계 법령에 따라 배치

다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시기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라.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- 2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,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3)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기술인 등급과 경력·실적이 있는 자로서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.

## 5.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

- 1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업무는 설계용역 성과검토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  - 2)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
    - ①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
    - ②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전 단계 용역수행 내용의 검토
    - ③ 현장조사(측량, 현지여건, 지반상태, 재료 등)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·확인
    - ④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(시방서, 지침, 법규 등) 적용의 적합성 검토
    - ⑤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·확인
    - ⑥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·확인
    - ⑦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
    - ⑧ 설계도서의 누락, 오류,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, 확인
    - 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
    - ⑩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
    - ⑪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,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 여부 확인
    - ⑫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참여 여부 확인

- ⑬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여부 확인
- ⑭ 설계 공정의 검토·확인
- ⑮ 시방서(일반 및 특별시방서) 작성의 적정성 검토·확인
- ⑯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
- ⑰ 기타 추가업무(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업무)

### 3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

-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
- 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
-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
- ④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
-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
-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
- ⑦ 신공법,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
- ⑧ 공사기간 및 공사비(생애주기비용)의 적정성 검토
- 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

## 6. 세부수행업무

### 1) 설계용역의 관리

-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  - 가. 예정공정표

#### 나. 과업수행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

-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·확인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.
-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,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가.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
  - 나. 공정표, 주요 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
  - 다.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
-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 (컨소시엄)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.
  - 나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,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, 설계 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

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,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·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

## 2) 전 단계 조사 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

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전 단계 용역성과(광역교통개선대책, 예비타당성 조사, 기본설계 등)를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가. 기본설계 시 광역교통개선대책,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확인사항

- ⓐ 광역교통개선대책,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
- ⓑ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
- ⓓ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(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, 공사비 등)
- ⓔ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
- ⓕ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·반영 하여야 할 사항
- ⓑ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나.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 및 기존 실시설계에 대한 확인사항

- ⓐ 기본설계 및 기존 실시설계 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(시방서, 지침, 법규 등) 및 제·개정 사항
- ⓑ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
- ⓓ 기본설계 및 기존 실시설계 시 제시된 공사비
- ⓔ 기술개발 및 신기술,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
- ⓕ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 3) 발주청, 설계자에 대한 지원

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설계 수행절차의 운영상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① 민원, 관원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지원
- ②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도모
- ③ 설계자의 기술인문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보완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
- ④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
- ⑤ 기타 발주청, 설계자가 원활한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

#### 4) 설계용역 성과검토

-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  - 가. 공사의 특수성, 지역여건,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
  - 나. 자재의 성능·규격 및 공법,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, 안전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
  - 다. 실제 건설과정, 주요공종,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
  - 라. 기타,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,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건설기간 중의 폭우,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
  - 나.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
  - 다. 이상 한파,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
  - 라.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

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지를 검토해야 하며, 세부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시공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
- 나. 단순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
- 다. 유연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
- 라. 기준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
- 마.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
- 바.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

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가. 도면작성이 의도하는대로 완벽성, 정확성,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
- 나.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
- 다. 설계결과물(도면)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
- 라.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
- 마.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- 바. 도면이 적정하게, 해석 가능하게,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
- 사.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

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의 누락, 오류, 불명확한 부분,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, 설계자에게 수정,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## 5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

-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“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”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,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
  - 나. 제안서 제출 및 보고
  - 다.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
  - 라.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·반려
-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가.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, 각각의 장·단점,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,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
  - 나.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
  - 다.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
  - 라. 수정설계 비용,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이 채택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
  - 마.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
  - 바.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
  - 사.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
-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,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,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.

6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준비단계, 분석단계,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.

-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,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,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,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.

-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, 아이디어의 창출, 아이디어의 평가, 대안의 구체화,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.

·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·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,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. 단,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.

·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대상 시설물 설계자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
7) VE수행절차 및 내용

-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VE Job Plan 표준절차에 딸라 준비단계(Pre-Study), 분석단계(VE Study), 실행단계(Post-Study)로 나누어 실시하며, 각 추진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기법은 해당 설계 VE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설계VE 시행은 발주청 ‘설계VE 운영계획’에 따라야 하며, VE워크숍 개최 및 VE리더 외 팀원구성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## 7. 건설사업관리 기록 유지관리

1)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,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전자매체(CD-ROM)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근무상황부(별지 제2호 서식)
- ② 건설사업관리일지(별지 제3호 서식)
- ③ 건설사업관리지시부(별지 제5호 서식)
- ④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록부(별지 제6호 서식)
- 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(별지 제8호 서식)
- ⑥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(별지 제9호 서식)
- ⑦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(별지 제10호 서식)
- ⑧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(별지 제11호 서식)
- ⑨ 설계도서 검토의견서(별지 제12호 서식)
- ⑩ 각종 보고서
- ⑪ 설계도서 (내역서, 수량산출, 단가산출, 도면, 계산서 등) 검토한 근거서류
- ⑫ 당해 용역관련 수·발신 공문서 및 서류
- ⑬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- ⑭ 출근부

2)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3)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

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한다.

## 8. 용역관련 행정처리

### 1) 착수신고서 제출

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, 도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착수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2)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건설사업관리 대상 : 용역명, 건설사업관리 규모,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
- ②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 :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
- ③ 세부시행계획 :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
-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
-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

### 3) 월간 추진현황 보고

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 추진현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과업추진내용
- ②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
- ③ 건설사업관리일지, 건설사업관리지시부 등 증빙서류
- ④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

### 4) 중간보고서

과업의 노선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공정현황 :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
- ②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
- ③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
- ④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5) 최종보고서

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
- 각종 기술검토 내용
-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
- 측량 및 토질(지질)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
- 신기술,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
-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
- 참여기술인(책임기술인, 분야별책임기술인, 분야별참여기술인 등)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
-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

#### 6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

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검토제안서와 가치향상·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

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, 각각의 장·단점,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,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
-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
-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
- 수정설계 비용,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
- 제안된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
-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
-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

## 9. 성과품 납품

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(CD-ROM)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·감할 수 있다.

- 1)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5부 및 CD보고서 5부
- 2)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5부 및 CD보고서 5부
- 3)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록 및 VE수행서류 일체

## 10. 기타 사항

- 1)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,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2)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.
- 3)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,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조치 할 수 있다.
- 4)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시에는 발주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- 5)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6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7) 발주청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,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IV.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

1.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.
2. 모든 비밀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,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.
3.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발주기관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,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4.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,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설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해당 도급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.
5.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6.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각 종 서 식

### 유 의 사 항

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.

따라서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·결정한 후 사용도록 하여야 함

## 각종서식 별지목록

- [별지 제1호] 착수신고서
- [별지 제2호] 근무상황부
- [별지 제3호] 건설사업관리일지
- [별지 제4호] 지원업무수행 기록부
- [별지 제5호] 건설사업관리 지시부
- [별지 제6호]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 기록부
- [별지 제7호] 건설사업관리 요청서
- [별지 제8호]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
- [별지 제9호]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
- [별지 제10호]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
- [별지 제11호]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
- [별지 제12호] 설계도서검토의견서
- [별지 제13호]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
- [별지 제15호]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
- [별지 제16호] 건설사업관리 조서
- [별지 제17호]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
- [별지 제18호]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
- [별지 제19호] 설계용역 준공검사원
- [별지 제20호]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

[별지 제1호 서식 : 착수신고서]

# 착 수 신 고 서

계 약 건 명 :

계 약 금 액 :

계 약 년 월 일 :

착 수 년 월 일 :

준 공 기 한 :

붙임 :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

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의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

### [별지 제2호 서식 : 근무상황부]

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부

[별지 제3호 서식 :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]

##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

용역명 :	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	
일자 :		
주요업무 :		
구분	시간	업무내용

작성자 : (서명)

[별지 제4호 서식 : 지원업무수행 기록부]

지원업무수행 기록부		결 제			
용역감독관 : (인)					
건설사업관리대상 : 설계용역					
년 월 일 ( 요일)					
수 신	○○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책임기술인	참 조	구 조 ( ) 토 질 ( )분야 책임기술인 도로 ( )		
제 목					
지 시 내 용					
조 치 계 획					

## [별지 제5호 서식 : 건설사업관리 지시부]

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		결 제			
			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:		(인)
설계용역명 :		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(    요일 )		
수 신		발 신			
참 조		발송일자			
제 목					
지 시 내 용					
첨 부					
수 신 처 확 인					

### [별지 제6호 서식 :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]

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		결 제					
		건설사업관리기술인 :		(인)			
설계용역명 :				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(    요일 )		
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공      종							
특      기 사      항							
기술검토 및 토의사항							
수정또는 지시및 이행사항							
종      합 의      견							

[별지 제7호 서식 :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]

<b>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</b>		결 제		
용역명 :				
일자 : 년 월 일 (요일)				
수신		발신		
참조		발송일자		
제목				
지시내용				
첨부				
수신처 확인				

[별지 제8호 서식 :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]

<b>기본(실시)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</b>		결 제			
건설사업관리기술인 : (인)					
설계용역명 :					
년 월 일 ( 요일)					
제 목					
협 의 내 용					
참여자	소 속	직 위	성 명	서명	
장 소					

[별지 제9호 서식 :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]

##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

■ 용역명 :

■ 감리자 :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

전화 : fax :

h.p :

실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

전화 : fax :

h.p :

■ 착수일자 : 년 월 일( 요일)

■ 공기관계 : 년 월 일 :착수

: 년 월 일 ~ 200 년 월 일 :과업중지

: 년 월 일 :과업재개

-현재 진행중

■ 잔여공기 : 일

■ 계약변경 : I.전체용역비: 원 , II.1차변경:해당사항없음

■ 현재추진현황

구 분	설계용역사	현단계	건설사업관리 착수예정일	비 고

[별지 제10호 서식 :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]

##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결 과	비 고

[별지 제11호 서식 :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]

##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 결과

용역명			
실시설계명			
분야		항목	

당초계획		건설사업관리 결과
개선전	개선전	
	개선후	
효과 (기술성)		

[별지 제12호 서식 : 설계도서검토의견서]

※ 건설사업관리 대상시설물 :

분야 :		설계도서 검토 의견서	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:
종	구분	검토 의견	비고

[별지 제13호 서식 :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]

구 분	검 토 사 항	근 거	비 고

[별지 제14호 서식 :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]

##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
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우 (인)

1. 설계용역 명 :
2. 위 치 :
3. 계 약 금 액 :
4. 계약 년월일 :
5. 차수 년월일 :
6. 준 공 기 한 :
7. 현 재 공 정 : 20 . . 현재 %
8. 첨 부 서 류 :

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, 설계기준 및 기타  
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,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 
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 
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  
상 호 :  
성 명 :

귀 하

[별지 제15호 서식 : 건설사업관리 조서]

##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

설계용역명 :

년 월 일 준공

년 월 일 와 계약분

위 설계용역의     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검사한  
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용역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     %로 조정함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기성부분      검사자 :      (인)

입      회      자 :      (인)

귀      하

[별지 제16호 서식 :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]

##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

1. 도 급 액 :
  2. 용 역 명 :
  3. 기성부분금액 : 20 년 월 일 현재
  4. 내 역 :

(갑)

(을)

[별지 제17호 서식 :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]

##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

## 설계용역명 :

년 월 일 준공  
년 월 일 와 계약분

위 설계용역의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 
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을 %로 조정함.

년 월 일

기성부분 검사자 : (인)

입회원 : (인)

귀하

[별지 제18호 서식 : 설계용역 준공검사원]

##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
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우 (인)

1. 설계용역 명 :
2. 위 치 :
3. 계 약 금 액 :
4. 계약 년월일 :
5. 차수 년월일 :
6. 준 공 기 한 :
7. 실지준공년월일 :
8. 첨 부 서 류 :

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,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,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설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상 호 :

성 명 :

귀 하

[별지 제19호 서식 :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]

##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

설계용역명 :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준공  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와 계약분

위 설계용역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검사한 결과 계약서,  
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준 공 검 사 자 : (인)

입      회      자 : (인)

귀      하

## V. 근무계획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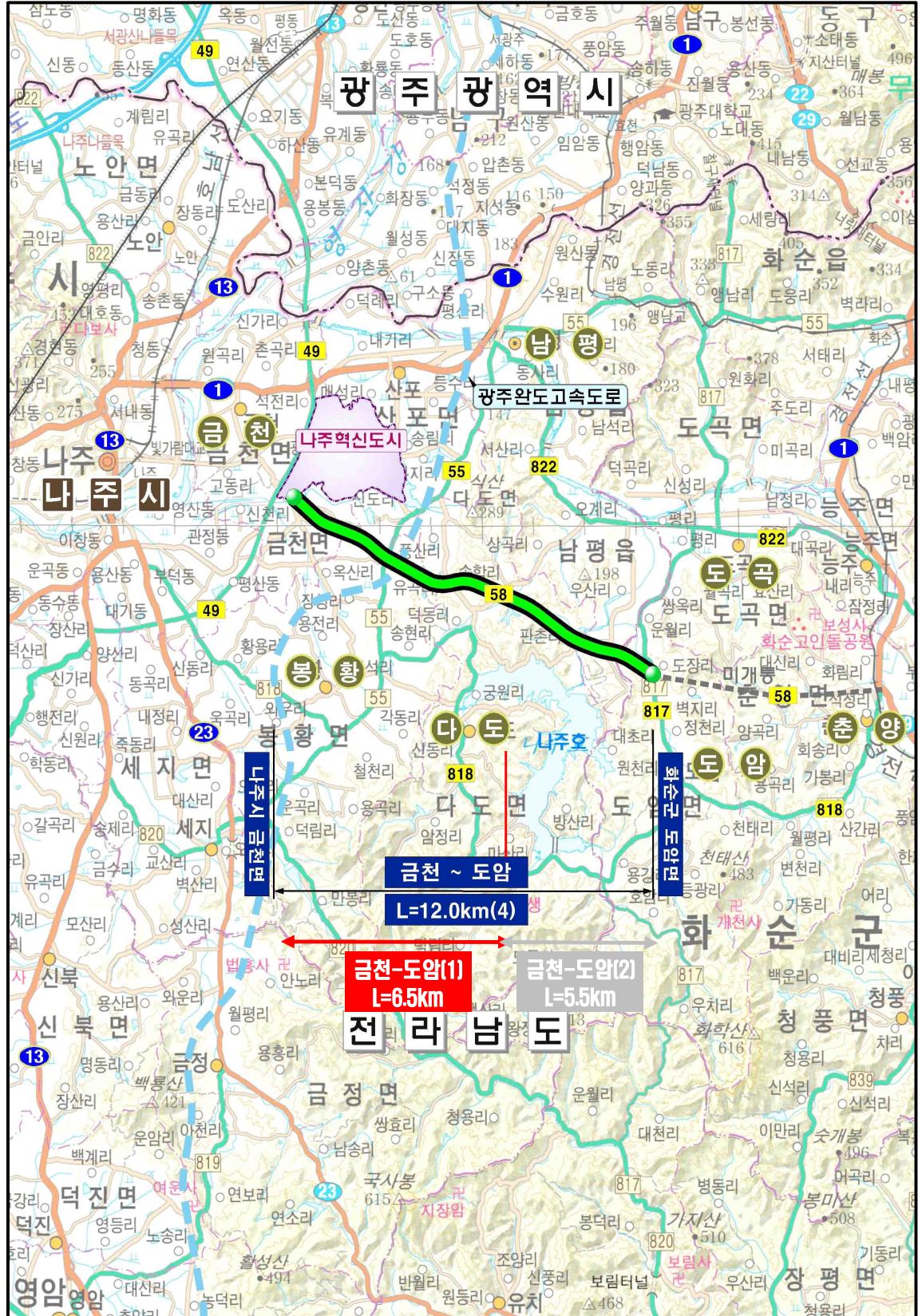
◎ 전 체 : 12개 월(360일)

## VI. 설 계 예 산 서

## VII. 위치도

금천-도암 1

## 구간



금천-도암 2

구간

